

“ ” ...

2006 05 22



‘ ’

( )가 2003 ‘ 53 2 3 “

, 가

12 , 前 , 가 “ 53 2 3 ‘

“ 가

, 31 6 ”

가 2005 (2003.2.27) , 가

‘ ’

가

“

”

, 가

‘ ’

가 ‘ ’ “

” “

”

“ ” , 가

,

가 ( ) “ 가

” “가

,

”

가 2005  
가

가 ‘ ’ 가

,

가

, 2003 ‘

가 ’ 가

가

가

“

”

,

,

가

,

가

가

‘ ’

,

[ysheo@kyosu.net](mailto:ysheo@kyosu.net)

## 교수재임용제 헌법소원 주요 쟁점

(구)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(2003.2.27)을 내림에 따라, 재임용 탈락의 사전·사후 구제 절차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정(2005.1.27)이 되었지만, 여전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,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개정 법률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됐다.

| 구분    | 헌법불합치 결정 받은 조항  | 헌법소원 청구된 조항  |
|-------|---|--|
| 조항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구)사립학교법 제53조의2(1990. 4. 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(구)사립학교법 제53조의2(1997. 1. 1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·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• (구)사립학교법 제53조의2(1999. 8. 3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·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현)사립학교법 제53조의2(2005. 1. 27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, 급여, 근무조건,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·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</li> <li>①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/ul> |
| 위헌 부분 | <p>"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을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재임용 대상으로부터 해제하는 기준이나 요건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지침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, 부당한 재임용거부의 구제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." (헌법재판소, 2003. 2. 27)</p>  | <p>"이 사건 개정 법률의 규정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별다른 하자가 없는 한 다시 임용해야 하는 여부를 규정함이 없고, 법률이 아닌 사립학교 이의집단의 정관과 학칙의 규정에 의해 교수 재임용을 결정하게 해, 헌법 제 31조 제6항의 교원지위 보장원칙을 여전히 위배하고 있다. (후략)" (헌법소원심판청구 내용, 2006.5.12)</p>  |